

조문별 제·개정 사유서(공소보류자관찰규칙)

1. 공소청법 제정 등과 관련된 규정 내용 정비(안 제9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검찰청을 폐지하는 한편,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「정부조직법」(법률 제21065호), 「공소청법」(법률 제21490호) 등이 2026. 10. 2. 시행 예정인 바, 관련 법령 제·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규정 내용 정비

나. 제·개정 내용

- ‘지방검찰청 검사장’을 ‘지방공소청장’으로, ‘지방검찰청 지청장’을 ‘지청장으로 각 명칭 변경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: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 : 기관 등 명칭을 상위법령 개정 내용과 일치시켜 규정 의미의 명확성·연속성 확보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2. 국가보안법,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 관련 규정 내용 정비 (안 제1조, 제2조, 제11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갱생보호법 폐지, 현행 국가보안법 및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내용 등 반영하여 원용 법령, 조문 내용 등 변경

나. 제·개정 내용

- 국가보안법 “제16조 제1항”, “제16조 제3항”을 원용하고 있는 부분을 현행 국가보안법의 내용에 맞추어 “제20조 제1항”, “제20조 제3항”을 원용하는 것으로 변경 (안 제1조, 제2조)
- 폐지된 법률인 갱생보호법 제12조의 규정을 원용하고 있는 부분을 현

행법인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66조 제1항의 규정을 원용하는 내용으로 변경 (안 제11조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: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 : 각 규정이 현재 시행 중인 관계 법령의 내용을 원용하도록 변경하여 규정 의미의 명확성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3. 훈계 및 서약서 징구 관련 내용 삭제(안 제2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공소보류 결정시 훈계 및 서약서 징구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국민 기본권 보호 강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제2조의 표제를 “훈계”에서 “고지”로 변경하고 제2조 제1항 중 훈계 관련 내용 삭제
- 서약서 징구에 관한 제2조 제2항 삭제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: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 : 기본권 침해 우려 해소 및 국민 기본권 보호 강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해당사항 없음